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57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2. 4.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56,634,8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634,8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8. 7. 6.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C에게 대출한도를 50,000,000원,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C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출을 실시하는 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대출기간을 2019. 10. 23.까지로 연장하였는데, C은 위 대출기간 도과 후에도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20차8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8. 'C은 원고에게 51,766,540원과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 130,6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7. 6.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7.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3,364,315원,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78,068,052원,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75,5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시가 합계 172,490,400원으로서 C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6. 2. 6.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7. 3. 28. 설정등

기된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8. 7. 25.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전시청에 대한 과세자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기간을 연장한 2018. 10. 20.경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20. 5.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10. 20.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7. 6.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23,364,315원이 발생하여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전액과 독촉절차 비용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앞서 이루어졌고, 위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까지는 위 대출한도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대출금액이 줄어든 적은 있었으나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마이너스 통장 계좌 잔고가 0원 이상이었던 적은 없었고, 대출만기일인 2019. 10. 23.에는 대출한도액인 50,000,000원 까지 대출을 받았으며, 그 이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전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현실화되었으므로,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C이 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C에 대한 57,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3,364,315원밖에 부담하고 있지 않아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액수만 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C이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172,490,4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78,068,05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부동산 가액 및 피담보채무액이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각 가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가액은 94,422,348원(= 172,490,400원 - 78,068,052원)이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 56,634,844원 [=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51,766,540원 + 50,000,000원에 대한 2020. 2.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12. 9.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737,704원(= 50,000,000원 × 289일/366일 × 12%) + 독촉절차비용 130,600원]을 초

과한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56,634,844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634,8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대전 중구 F 대 166.1㎡

2. 대전 중구 F

[도로명주소] 대전 중구 G

세멘벽돌 및 연와조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75.27㎡, 2층 18.90㎡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부속건물 5.10㎡

이상.